

<b>의안 번호</b>	<b>2463</b>	<b>[울산 중구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]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8. 22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8. 2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9. 8.(월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보건소장 이현주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. 12. 31.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위탁사무명: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
- 2) 추진근거
- 3) 위탁 필요성
  - 울산 유일의 중구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고혈압·당뇨병 환자에게 실천적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여 자가관리 및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기관으로 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
  - 등록된 의원(49개소) 및 약국(72개소)에 대한 협력체계 유지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, 환자 조기발견·등록관리, 교육·상담 및 홍보 등 조직적 운영 필요
  - 이에 따라,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

4) 위탁사무 내용

- 고혈압·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서비스 제공
-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기술지원
- 고혈압·당뇨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- 그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5)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)

소재지	규모		지원시설
	인력	면적	
태화로 95, 건강지원센터 2층	6명 (센터장 1, 팀장 1, 팀원 4)	95㎡	사무실, 교육장

6) 위탁기간: 2026. 1. 1.~2028. 12. 31.(3년)

7)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및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른 선정

8)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

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2025년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」에 등록교육센터는 지역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명시</li> <li>○ 전문적인 지식,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이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이 적절함</li> </ul>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 법령 및 규정, 지침 등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</li> </ul>
3. 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접 운영 시,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수행 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정원 증원 및 추가 예산 필요</li> <li>○ 전국 19개 등록교육센터 중 3곳(강원 동해시, 전남 여수시, 전남 장성군)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</li> </ul>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민간위탁 시, 수탁기관의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확보에 용이</li> <li>○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·관리 가능</li> </ul>

검 토 항 목	검 토 내 용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등록환자 현황, 교육 현황 등으로 성과 측정 가능</li> <li>○ 반기별 실적 및 예산 등 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</li> </ul>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련 법령 및 위·수탁 협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</li> </ul>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수혜대상이 중구 고혈압·당뇨병 등록환자 및 주민으로 의료관련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민간의 역량 평가 후 위탁</li> </ul>

**다. 근거법규**

-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위임 및 위탁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
- 「지역보건법」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
- 2025년 고혈압·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

**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명주)**

- 본 동의안은 중구 고혈압·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(2025. 12. 31.)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혈압·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, 동의안의 내용 전반을 검토한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거법규

##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20조(위임 및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,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1조(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)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(영리법인은 제외한다)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·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

## 지역보건법

- 제30조(권한의 위임 등)**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하거나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, 의료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(實費)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## 지역보건법 시행령

- 제23조(업무의 위탁 및 대행)**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4.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, 실험 또는 검사 업무

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,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 사무)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